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3. 6
나. 회부일자 : '97. 3. 7

3. 제안이유

○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도지사 권한사무중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
○ 환경부고시('96-147호)등 관련규정 및 지침변경으로 사무의 위임근거 일치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,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,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, 제38조, 제61조,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권한사무중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고 환경부고시등 관련규정 및 지침변경으로 사무의 위임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골자를 보면

제1조중 사무의 위임 및 위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촌진흥원장을 포함시키고,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는

· 지방연구관, 지도관의 전보권 및 호봉승급

· 지방연구사, 지도사의 전보권 및 호봉승급으로 하고,

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중 제6호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사항, 제9호 과태료의 부과, 징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은 제외시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고 제6호중 "가" "운행차 점검실시"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